

입법예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 10.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1. 개정이유

기존 논활용직불제가 하계작물을 추가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에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 선택형 공익직불제의 지급 제한 처분 사유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경관작물과 전략작물의 작기(동계·하계)를 구분하여 재배하는 경우 해당 직불금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조건을 개선(안 제32조)
- 나.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친환경 농업직불금, 친환경축산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의 지급제한 처분의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화(안 별표 4~7)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관작물과 작기(동계·하계)를 구분하여 재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고려하여”를 “고려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5 제1호나목 중 “고려하여”를 “고려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중 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6 제1호나목 중 “고려하여”를 “고려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중 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7 제1호나목 중 “고려하여”를 “고려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중 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 제외 농지) 영 제43조제2항 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제32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 제외 농지) ----- ----- ----- -----.		
1. 영 제40조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단서 신설>		1. ----- ----- . <u>다</u> <u>만,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관작물과 작기(동계·하계)를 구분하여 재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별표4]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한(제23조 관련)		[별표4]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한(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1. 일반기준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u>고려하여</u> 지급제한 기준(제2호가목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나. ----- ----- <u>고려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 -----.		
< 신 설 >		1) <u>가중 사유</u> <u>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u>		

2. 개별기준
(생략)

[별표5]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한(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제한 기준(제2호가목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신 설 >

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현행과 같음)

[별표5]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한(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

고려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

-----.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2. 개별기준

(생략)

[별표6]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제한 기준(제2호가목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신 설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현행과 같음)

[별표6]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
----- 고려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

2. 개별기준 (생략) [별표7] 전락작물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기간(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u>고려하여</u> 지급제한 기준(제2호가목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u>< 신 설 ></u> 2. 개별기준 (생략)	<u>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u> 2. 개별기준 (현행과 같음) [별표7] 전락작물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기간(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 ----- <u>고려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 ----- -----. 1) <u>가중 사유</u> 가) <u>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u> 나) <u>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u> 2) <u>감경 사유</u> 가) <u>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u> 나) <u>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u> 2. 개별기준 (현행과 같음)
--	--